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6. 26. 정연욱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 6.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8. 2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2. 18.)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원안가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12. 19.)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정연욱의원)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운영 지원,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관련 진로 교육 활성화 등과 같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와 내용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천우정)

가. 개정안 요지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과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 ----- -----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u>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 ----- -----. <u>1.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u> <u>2.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u> <u>3.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u> <u>4. 이스포츠 대회 개최</u> <u>5.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u>
--	---

나. 검토사항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운영 지원,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관련 진로 교육 활성화 등과 같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운영과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관련 진로 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 이스포츠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재 양성 선순환 구조 확립,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이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팀 창단과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있으며,¹⁾ 이스포츠 관련 학교 및 청소년 교육을 확대할 경우 이른 나이에 은퇴하는 이스포츠 은퇴 선수가 코치나 지도자로서 제2의 진로를 개척할 기회를 제공하고²⁾ 은퇴 선수들의 경험을 청소년 교육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아 개정안에 대하여 전부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음.

4. 대체토론 요지

해당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임오경)

원안대로 의결함

1)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역 이스포츠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부터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총 3개 종목, 14개 지역)'가 출범하였고 리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역 연고팀의 활발한 창단과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임.

2) 2024 이스포츠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스포츠 프로선수 설문 결과, 불투명한 향후 진로를 38.4%(1위)로 꼽음.

6. 찬반토론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

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2.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3.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4. 이스포츠 대회 개최
5.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u>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u>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 ----- -----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 ----- -----.
<u><신 설></u>	1. <u>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u>
<u><신 설></u>	2. <u>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u>
<u><신 설></u>	3. <u>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u>
<u><신 설></u>	4. <u>이스포츠 대회의 개최</u>
<u><신 설></u>	5. <u>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u>